

사용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획득한 상표의 등록에 관한 고찰 (완)



정 광 선
(변 리 사)

목 차

- I. 글 머리에
- II. 사용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식별력)을 얻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허여 규정의 취지
- III.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의 적용요건
- IV. 본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
- V.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갖춘 것을 이유로 등록되는 상표에 관한 본항 규정 및 동 족속기간갱신등록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의견
- VI. 맺는 말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 호)

IV. 본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

1. 일반상표권과 동일한 효력

가. 본항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에 관하여는 일반상표권과 그 효력이 동일하다는 주장과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후자에 관해서는 뒤에 상세히 검토하기로 하고, 본항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라도 일단은 일반상표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88후 974, 981, 998 판결).

따라서, 본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상표권의 침해예방 및 침해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며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법상 각종의 보호를 받게 된다.

나. 뿐만 아니라, 본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로서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동일,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것이다. 이에 반하여 본항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성질표시적 상표등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선원, 선등록상표로서의 적격성이 논란이 될 것이다.

다. 또한, 당연한 귀결이지만 본항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동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유지되고 있는 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됨을 이유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72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항은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특별규정 우선의 원칙에 의

하여 본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2. 상표권의 효력의 제약

가. 상표법 제51조와의 관계

(1) 적법하게 등록을 받은 일반 상표권에도 각종의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이 있게 마련이므로, 본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의 경우에도 그러한 일반적인 효력의 제한이 있음은 물론, 원래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는 취약점을 가졌었다는 그 특성상 어느 상표와 효력이 똑같을 수는 없고 특유의 제약요건을 가진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의 경우에도 상기의 상표들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갖춘 것을 이유로 등록이 허용 되었으므로 상기 상표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2) 생각컨데,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식별력)”이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특정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공익적 측면보다는 주로 현저해진 사인의 상표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권익보호, 즉 사익보호의 측면에서 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성질표시적 상표등을 특정인의 권리화 함으로써 선량한 수요자의 자연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의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취지상 동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본항(상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본항에 규정되었지

만 상표법 제51조에서 빠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해당의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라도 온전한 상표의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경우에도 등록된 상표권자의 권익보호와 조화를 위하여, 동제1호 후단과 같은 명문은 없지만 이를 보완해석하여, 본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동상표권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및 종전부터 영업을 하던자들도 그 영업규모를 현저히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부분에서는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본항에 의한 등록상표에 대한 최소한의 효력을 보장해 주는 것일 것이다.

나. 효력존속의 조건

(1)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상표의 효력존속의 조건이 요구되는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본항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동상표의 “사용행위”라는 사실에 터잡아 상표등록 저장사유의 예외를 인정받아, 상표등록을 허용받은 것이므로, 그 효력존속을 위하여는 동상표의 “사용행위”가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항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그 “사용행위”가 마치 민법상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라는 사실행위에 대하여 점유권을 인정한 경우(민법 제192조)의 “점유행위”와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상표법에서는 이를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까지 고양(高揚)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항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의 “사용행위”의 중단이나 중지는 그 등록의 효력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면 얼마만한 기간동안 그 사용행위의 중단이 동상표 등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이론상 해석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상표법은 상표권자 사망시 동상표의 상속 이전등록 시한과, 상속하지 않았을 때의 권리 소멸 시한을 각각 3년으로 하고 있고(제64조), 등록된 일반 상표라도 계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하고 있으며(제73조 제1항 제3호, '80년 개정이전법은 1년), 일정한 취소심판청구사유(제7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74조 제1항)가 있는 경우라도 동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취소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6조 제2항).

한편, 상표권 소멸후 타인의 출원제한기간은 1년(제7조 제1항 제8호)이고, 동소멸한 상표가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위의 1년기간 제한은 예외(제7조 제4항 제1호)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자체하자가 없는 일반상표라도 일정기간, 즉 3년 경과시는 상표에 대한 식별력과 보호필요가 없어지는 최장시한을 설정한 것이며, 또 한편 일반적으로 어느 소멸상표에 대한 식별력의 잔재기간은 1년정도라 본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항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상표 자체에 취약점을 내포한 상표이므로 그 식별력 인정의 기본이 되는 사용행위가 1년~3년간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권리로 고양된 사실행위가 다시 사실행위로 침강(沈降)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아무런 하자 없이 등록된 권리의 불사용 취소심판청구 요건기간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사용하지 않을 때”를 그 기준으로 설정함이 어떠할까 생각해 본다(일본상표법은 3년, 동법 제19조 제2항 제2호).

V.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갖춘 것을 이유로 등록되는 상표에 관한 본항규정 및 동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의견

1. 현행 상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문제점

가. 현행규정의 개정의 경과

현행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그 동안 몇번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구법(1980. 12. 31. 개정이전법)에서는 현행법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라는 법문이 없었던 바(현행 일본상표법 제3조 제2항도 같음), 구법(1980. 12. 31. 개정, 법률 제3326호) 개정시에 “...출원전에”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현행법(1990. 1. 13. 개정 법률 제4210호)으로의 개정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 출원전에...”라는 문구가 추가 삽입되었다.

나. 추가법문의 해석과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위와 같은 법문구가 추가됨에 따라 그에 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으며,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제도의 논리적 타당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1)주의적, 참고적 규정이라는 견해

본항의 규정은 상표를 특정상품에 “사용한 결과” 특별현저성이 생겨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표등록출원시에 동상표의 특별현저성

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라는 법문구가 삽입된 것은 주의적, 참고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시점을 출원시로 보고, 출원후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존재나 증강은 고려대상으로 하지 않는 입장에 선다.

(2) 한정적, 제한적 규정이라는 견해

본항의 규정중 추가 삽입된 법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시점은 반드시 출원시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시점(사정시점)까지도 확대하여 출원후에 계속적인 사용과 광고활동 등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증강되었으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 출원전에...”란 법문구가 추가되면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시점이 출원시로 한정되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나아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란 문구는 엄격히 신규출원의 경우만을 한정하는 것이고, 본제도의 성격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란 사실행위에 터잡아 인정되므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에 본제도를 인용하여 인정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상표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동 제4조 제1항 제5호와 동일한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도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

다. 입법론적 개선방안

위 “나”에서의 양의견은 각각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 주장의 당부를 논하기보다, 본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의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는 필요한 것이고, 구미각국은 물론 일본법에서

도 인정되는 세계 공통의 제도이므로 우리상표법에서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득책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논쟁의 불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법 개정시 문제의 부분을 삭제했으면 한다.

2. 본항에 의한 등록상표의 갱신등록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가.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현행법에 따른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면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출원서에 등록상표의 사용설명서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당해 상표의 공서양속 위반여부 정도만 점검하고 대부분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허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첫째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허부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심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시의 심사범위와 관련하여 심사착안사항은 공서양속위반여부만이 아니라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의 존속여부는 물론이요, 그 밖의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항 해당여부(특히 관용표장화 여부, 현저한 지리적 명칭화 여부)와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들도 아울러 검토가 되어야 하는바, 이들에 대한 검토가 소홀히 다루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본항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와 일반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별구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할 상표에 관한 사용설명서의 첨부는 1994년 3월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본항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와 일반등록상표가 상표등록부상 어떤 구분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항에 의하여 등록

된 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허여할 경우에도 상표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서류 나아가 상표심사기준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자료와 증거방법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상표의 경우와 같이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허여될 개연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상표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나 상표심사기준 제12조의 규정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일반적인 규정이기도 하나, 실질적인 규정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

그 하나는 규정의 형식이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주체적인 사용실적만을 증거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국의 어떤상품(상표)이 국내에 다량 수입되어 유통되고 동상품(상표)이나 기업이 이미 세계적으로 저명한 것이어서 국내 매스컴은 자발적으로 대대적인 취급을 계속해오는 경우라도, 이러한 상표는 국내에서 3년간의 사용실적(현행 기준상으로는 구체적인 기간은 개정됨)이 없고 국내사용지역 입증이 어려우며 지정상품의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량 등의 입증을 못하고 사용방법 및 횟수에 대한 자료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 선전광고 사실증명도 갖추지 못하는 등 증거방법도 갖추지 못하여 본항에 의한 등록을 허여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주지·저명한 외국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유사한 타인의 출원을 부등록 사유로 하므로써 사실상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바,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의 규정에 따라 동맹국 국민의 주지·저명한 상표를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위의 보호로서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이러한 규정들은 산업재산권제도가 발달된 국가 국민들의 상표에 대한 특혜적인 규정인데, 그들이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라 등록을 허여받고 등록료 등 부담을 스스로 하겠다는데 즉, 우리나라 상표법의 제도권내로 들어와 보호를 받고자 한다는데 이것을 굳이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 하나는 동규정들이 규정형식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정에 아니어서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식별력)을 그 예외인정의 실질적 근거로 하고 있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내용과 다소 괴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는 일반적으로 타당하고 또 실제운영에 있어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확인하는 것을 심사의 잣대(尺度)로 삼음으로서 실무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상표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 “바”목이 상표심사기준에서 반영이 되지 않고, 한정적, 나열적 규정방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직된 운영에 흐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넷째로, 상표공보에 그리고 상표등록원부에 본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등록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서 필요없는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청구등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나아가서 본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상표등록원부상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성질표시적인 상표

등에 관한 유사여부 등의 판단에 있어서 그 논리적 전개에 매우 큰 어려움과 애매성 그리고 때로는 상반되는 결론에 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상표가 본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무효사유가 치유(보전)된 것이라는 심결례나 대법원판례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 이를 응변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본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존재의 검증없이 또 당해 절차와 관련된 자료와 증거방법의 구비없이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이루어진다면, 본항에 해당하는 성질표시적 상표등은 특별규정에 의한 예외적인 등록인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표가 되어 상표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존속기간 갱신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며, 실제 운영에 있어서 경직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이다. 더러 상충된다고 보이는 심결례나 대법원 판결례도 어느 면에서는 본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부터 연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개선의견

본항에 해당하는 상표들이 제대로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의 인정을 받아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에 적시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출원인 및 상표권자가 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상표가 본항에 해당되는 상표임을 주장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제반 증거서류와 방법 등을 갖추어 출원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심사과정에서 본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는 것임을 명백히하

여 상표출원공고시 상표공보에 그 사실을 기재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상표등록절차를 개선하여 상표등록원부에 본항에 의하여 등록되는 상표의 등록사유를 명기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본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임을 모르는데서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는 것이다.

넷째로, 상표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의 일부와, 상표심사기준 제12조 일부를 개정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자료와 증거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여 본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정으로는

① 상표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의 “바”를 “가목 내지 마목 외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을 “가목 내지 마목 외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항(동자료만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의 일부자료를 생략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고,

② 상표심사기준 제12조 제3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기타 제2호~제5호외의 자료로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규정하며,

③ 상표심사기준 제12조 제4항 제5호에 ()를 추가 신설하여(출원인이나 상표권자 스스로 선전, 광고한 것이 아니라도 홍보매체 등에 취급·게재되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함)을 두면 되리라고 생각한다.

다. 예상효과

위 나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 졌을 때의 예상효과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는, 본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을 하여하거나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여하는 제도의 운영을 좀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는 일반상표의 등록이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의 운영과, 분명한 구분이 없는 경우가 없지 않았던 바, 그러한 불분명성(不分明性)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둘째로, 상표심사기준 적용의 명료화를 기할 수 있고, 유사의 한계선상에 있는 상표들의 애매모호한 기준적용에 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어떤 상표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각기 다른 주체(상표권자)에게 등록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심사의 흐름이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 등록을 하여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들 상표들의 대부분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경우가 많은 바, 등록원부에 그러한 사실이 명기되어 진다면 그러한 불명료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어떤 구체적인 등록상표의 상호 비교시 그 기준이 명확하여 일반민원인(출원인 등)의 상표심사결과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상표제도와 실무에 관하여 잘 아는 출원인의 경우는 덜하지만, 이를 어설프게 알고 있

는 출원인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이리이러한 경우도 등록이 되었는데 그보다도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유사하지 않은) 자신의 출원상표는 왜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인지 따지고 드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상표등록원부에 그러한 예외적 사항들에 관한 자료가 명기되어 있다면 이들을 납득시키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다.

넷째로, 본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임이 상표공보나 상표등록원부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지면 이의신청이나 심판, 상고심판 사건 등 상표분쟁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고, 본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에 관한 심결례나, 대법원 판례도 점점 쌓여가서 상표제도 운영에 보탬이 되게 될 것이다.

Ⅶ. 맺는 말

필자의 의견과 같은 개선조치와 운영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우리 산업재산권 행정의 절차의 간소화 편의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래의 상표심사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상표의 등록이나 거절이유에서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애매모호함을 불식하고 민원인의 이해를 증진하며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상표제도 운영이 다소 편협하다고 지적되던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가 일조가 될 수 있다면 더없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한발앞선 상표출원 국제경쟁 앞서간다